청렴韓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안내 및 가입 독려 요청**

1. 의료기관정책과-3602(2026.5.12.)호와 관련됩니다.

2.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26년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안내드립니다. 본 **고액 배상보험료**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이에 각 단체에서는 회원 의료기관에 본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5년 대비 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변경 주요내용 >

구분		지원대상	고액 배상보험 보장한도	국가지원 보험료	의료기관 부담 보험료
25년	전문의	산과, 소아외과계열	17억 원 (자기부담 2억 원)	1인당 150만 원	1인당 20만 원
	전공의	8개 필수의료	3.3억 원 (자기부담 3천만 원)	1인당 25만 원	1인당 17만 원
26년	전문의	기존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18억 원 (자기부담 1.5억 원)**	**1인당 175만 원**	**없음**
	전공의	8개 필수의료	3.3억 원 (자기부담 2천만 원)	**1인당 30만 원**	**없음**

□ **지원대상 :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및 전공의**

o **전문의** : 분만 수행 산부인과(의료기관 종별 관계 없음), 소아 외과계열(병원급 이상)*, **모자의료센터(중증, 권역, 지역) 소속 전문의(산과, 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응급의학과, 타과)****

*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세부 전문의

**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의 전담 전문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 지역응급센터의 전담 전문의**

o **전공의**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 지원내용 :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료 전액 국가 지원

* '책임보험'(의료사고 손해배상 보장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27.5.27.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과 다름

o **전문의** : 고액 배상보험료 **1인당 175만원** 전액 국가 지원

- 고액 배상보험 : 자기부담금 1.5억 원 초과한 16.5억 원을 보장하여, 최대 18억 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

o **전공의** : 고액 배상보험료 **1인당 30만 원** 전액 국가 지원

- 고액 배상보험 : 자기부담금 2천만 원 초과한 3.1억 원을 보장하여, 최대 3.3억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

※ 수련병원이 기존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보장한도 최소 3억원, 보험효력 개시일 25년 12월 ~ 26년 11월)에는 **동일한 금액(1인당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고액 배상보험 특약

o **(보험 소급 효력)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7월 이내** 본 보험 가입 완료 시 **시범사업 참여 개시일(3월)부터** 소급 효력

o **(소액배상 등 지원) 경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본 보험 가입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손해 배상액을 별도로 지원**

□ 신청기간, 방법

o **(신청기간) 26.6.25.(목) ~ 2026.11.30(월), 상시모집**

※ 25년 가입자의 **갱신신청은 10월 1일(목)부터 11월 30일(월)**까지

o **(신청방법)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www.kmama.org/main/EMMI.asp)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전용 콜센터 상담전화(1600-1130)

※ 수련병원이 기존 배상보험에 대한 환급 지원을 선택하는 경우 동일

붙임 2026년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 사업 개시 보도자료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외과 학회,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 모체태아의학회, 신생아학회, 응급의학회, 외상학회, 대한의학회

주무관	**최승윤**	행정사무관	대결 2026. 6. 24. **김수영**	의료기관정책과 전결 장

협조자

시행 의료기관정책과-4563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10동 보건복지부 4층 의료기관정책과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478 팩스번호 044-202-3926 / seungyun1073@korea.kr / 비공개(5)